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 A

검 사 이진순(기소), 도준(공판)

판 결 선 고 2026. 5.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22년경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10. 19. 04:32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근데 누나 웰케 이쁨? 누나야 함 빨고 싶디ㅣ"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21

판사 김미경 _____